##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77

발의연월일: 2024. 6. 12.

발 의 자:허 영·이소영·진성준

전재수 · 이연희 · 위성곤

김영진 • 한민수 • 소병훈

천준호 • 한정애 • 최민희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 일부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18년 기준 국내 산업단지 2,015개에 원자력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대양광 잠재량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활용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국내 산업단지의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각각 연평균 10.8%와 8.0%의 증가율을 보여 산업부문 전체와 비교하였을 때 약 4~5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등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대가 필요함. 그런데 신재생에너

지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고, 입주기업의 파산 또는 이전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기간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대부분의 입주기업들이 추가적인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하여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자력으로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과 확충에 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구조고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제45조의2제3항제8호의2 및 제45조의5제2항제1호·제2호 신설).

#### 법률 제 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에너지이용효율 개선"을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으로 한다. 제45조의2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방안(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을 포함한다)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제45조의5제2항 본문 중 "공공시설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공공시설
- 2.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① 관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①
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제공, 에너지이용효율	에너지이용효율
<u>개선</u> ,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	개선,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
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u>확충</u>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
업계획의 수립) ①・② (생	업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구조	③
고도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한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	
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	
도 또한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8의2.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
	급 촉진방안(시설 개선 및 확
	충 방안을 포함한다) 및 온실

9. ~ 13. (생략)

④ ~ ⑨ (생 략)

제45조의5(비용부담 등) ① (생략)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중 공공시설에 한하여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 중 착공 후 30년 이상된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되는 산업단지구조고도와사업의 경우에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수 있다.

<u><신</u> 설> <u><</u>신 설>

<u>가스 감죽 방안</u>
9. ~ 13. (현행과 같음)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45조의5(비용부담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u>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 공공시설
2.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u>촉진을 위한 시설</u>
<u> </u>